

# 이민자보호교회 2주년 감사예배 제3회 심포지엄

주제 :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

일시: 2019년 5월 9일(목)  
오후 5시 (저녁식사 제공)

장소: 뉴욕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  
42-15 166th Street  
Flushing, NY 11358

협력: 뉴욕/뉴저지/커네티컷 교협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移民保护教会 Iglesia Santuario de Inmigrantes

## 이보교 2주년, 심포지엄 3주년

어릴 적, 시골 길에서 묘지 곁을 혼자 지나야 하는 공포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만 눈 앞에 두면, 심호흡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던 소년시절이 아른거립니다. 늘 지나쳐야 할 그 길이 제게는 식은 땀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팡이를 짚은 한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똑같은 길인데 노래까지 부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용기를 냅니다. 귀가하는 골목길에서, 아침에 눈을 뜬 침대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혼자여서 불안한 서류 미비자들과 함께 길동무가 되려고 이보교는 2년 전에 첫 용기를 내었습니다. 기댈 수 있는 어깨만 빌려줘도 눈물을 흘렸던 많은 서류 미비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진 어깨에 손을 얹어 토닥여 주었을 뿐인데 위로를 받으시는 서류 미비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1회 심포지엄은 이민자보호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2회 심포지엄은 인종차별과 증오범죄(Hate Crime)의 메시지를 동포사회에 던졌습니다. 잠잠했던 수면 아래의 이슈들이었는데, 이보교 심포지엄이 주제로 정한 다음부터, 미 전역에서는 주요 이슈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천둥소리로 예언자처럼 설 것을 이민자보호교회에 요구하시는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3회 주제를 정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민자보호교회는 동포사회의 고난 당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주제를 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가 “복지교회와 정부보조수혜자(Public Charge)” 입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실천하는 복지교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정부보조의 수혜를 받음으로 안정적인 체류신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민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대책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3회 이보교 심포지엄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임원진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교협, 지난 1년 6개월 복지교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준 차현화 복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 디렉터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 주제인 “복지교회”의 비전을 위해 이민자보호교회에서는 김동찬 대표님에게 리더십을 위임했습니다. 사회와 교회의 오작교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를 이민동포 사회에 한땀 한땀 수 놓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가입교회들, 법률인들, 시민운동가들, 언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민자보호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년 감사예배와 3회 심포지엄은 돌봄과 나눔의 가치로 용기를 얻는 천국 잔치입니다. 더불어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오늘 잔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혼자이면 두렵지만, 둘이 걸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민자보호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와 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함께 길을 걷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 TF 위원장 조원태 목사

# 목차

---

04 이민자보호교회가 걸어온 길

06 이민자보호교회 선언문

07 인사의 말씀

08 축사

09 예배

## 심포지엄

11 발제 1.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 | 김원재 목사

13 발제 2. 복지교회의 사회적 의미 | 김동찬 대표

15 발제 3. 복지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 차현화 사회복지사

19 발제 4. 주택관련 퇴거소송 및 관련법 | 토마스 리 변호사

22 발제 5. 정부보조수혜(Public Charge)가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 조문경 변호사

24 이민자보호교회 조직

26 후원광고

# 이민자보호교회가 걸어온 길

## 2017년

---

- 이민자보호교회 기자회견 : 2017년 3월 7일, 후러싱제일교회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 : 2017년 4월 6일(목)~7일(금) 저녁 7시, 후러싱제일교회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기도모임 : 2017년 5월 9일(화) 저녁 7시, 후러싱제일교회
- 이민자보호교회 4차 기자회견 : 2017년 6월 15일 오전 11시, 뉴욕우리교회
- 이민자보호교회 센터교회 방문설명회 : 2017년 6월 18일(주일)을 시작으로 3개월간 13개 교회 순방교육
  - ▲6월18일 오후 1시45분, 후러싱제일교회 ▲6월25일 오후 4시, 뉴욕한인교회
  - ▲7월2일, 뉴저지 필그림교회 ▲7월 9일 오후 1시30분, 아름다운교회 ▲7월16일, 뉴욕동양제일교회
  - ▲7월23일, 한울림교회 ▲7월30일, 효신장로교회 ▲8월6일, 뉴욕초대교회 ▲8월13일, 늘기쁜교회
  - ▲8월20일, 뉴저지 세빛교회 ▲8월27일, 뉴욕하은교회 ▲9월10일, 애틀랜타중앙교회
  - ▲9월17일, 뉴욕우리교회
- 이민자보호교회, 필라델피아의 아치 스트리트 연합감리교회(ASUMC) 방문 : 2017년 7월 12일
- 이민자보호교회 후원을 위한 뉴욕챔버콰이어칸타빌레 정기 연주회 :  
2017년 7월 16일(주일) 오후 6시 30분, 후러싱제일교회
- 이보교 후원을 위한 한층은 연주회 : 2017년 8월 4일 오후 7시, 후러싱제일교회
- 이보교 후원을 위한 제5차 다민족 선교대회 : 2017년 9월 10일(주일), 뉴욕효신장로교회
- 이민자보호교회 후원을 위한 조이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2017년 9월 10일(주일) 오후 6시 30분, 후러싱제일교회
- 코리안 퍼레이드를 통한 드림액트 청원 홍보 : 2017년 10월 7일(토), 맨하탄
- 제 1회 드리머를 위한 기도모임 : 2017년 12월 1일(금) 오후 8시, 후러싱제일교회

## 2018년

---

- 이민자보호교회, 드림액트 법안 통과 촉구 및 워싱턴 DC 대회 지지 기자회견 :  
2018년 1월 12일(금) 오전 11시, 후러싱제일교회
- 다카드리머를 위한 클린 드림액트 법안 통과를 위한 워싱턴 랠리 참여 : 2018년 1월 18일(목)

- 제 1회 다카드리머를 위한 희망콘서트 : 2018년 2월 4일(주일), 뉴욕우리교회
- 클린 드림액트 법안 통과를 위한 2018 설 퍼레이드 & 우리 설 대잔치 퍼레이드 참가 :  
2018년 2월 17일(토) 오전 11시, 플러싱
- 드림액트 법안 통과와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18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맨하탄 NYIC 사무실
- 다카드리머를 위한 랠리 : 2018년 3월 5일(토) 오후 5시, 플러싱
- 이민자보호교회 1주년 행사 기자회견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11시, 친구교회
- 이민자보호교회 1주년 감사예배 & 심포지엄(인종차별) : 2018년 5월 3일(목) 저녁 5시, 친구교회
- 이민자보호교회 전국 연합(NNKSC,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Sanctuary Churches) :  
2018년 7월 11~13일, 워싱턴 DC
- 이보교 복지교회 교육 시작 : 2018년 7월 23일
- 다민족선교대회 드리머 간증 : 2018년 8월 12일 오후 5시, 호신장로교회
- 뉴저지 이보교 TF 첫 모임 : 2018년 8월 12일
- 복지교회 방문설명회 시작 (친구교회, 어린양교회, 뉴욕우리교회, 후러싱제일교회, 한울림교회)
- 커네티컷 이보교 TF 모임 시작 : 2018년 8월 30일
- 커네티컷 이보교 방문설명회 : 2018년 6월 24일 오후 5시, 뉴헤이븐한인교회
- 이보교 기금마련 조이플 연주회 : 2018년 9월 9일, 센트럴교회
- UMC 한인여성교회 전국대회 이보교 소개 : 2018년 10월 7일 오후 5시, 워싱턴 DC
- 창작 뮤지컬 "드리머쇼셉" : 2018년 11월 10일 오후 7시, 팸팍고등학교

## 2019년도

---

- 뉴저지 복지교회 방문설명회 : 2019년 2월 24일 오후 4시, 뉴저지 동산교회
- 드리머를 위한 제2회 희망콘서트 : 2019년 3월 10일 오후 5시, 뉴욕우리교회
- 미주 한인 드리머 문예 공모전 : 2019년 3월 16일 오후 5시, MET CHURCH
- 뉴저지 이보교 방문설명회 : 2019년 3월 17일 오후 1시, 뉴저지 동산교회
- 제3회 이보교 심포지엄(복지교회와 정부보조수혜자) : 2019년 5월 9일 오후 5시, 호신장로교회
- 제74차 뉴욕 이보교 TF 모임 : 2019년 5월 3일 오전 9시, 후러싱제일교회
- 제13차 뉴저지 이보교 TF 모임 :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KCC(한인동포회관)
- 제3차 커네티컷 이보교 TF 모임 : 4월 25일 오전 9시, 한인회관

# 이민자보호교회 선언문

지금 이 땅에 1천 2백만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 하루하루 일터로 나가는데도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추방된 후 남아야 할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의 철창 속에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손잡고 미국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신의 꿈을 펼치기는 커녕 신분 문제로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희망을 꿈꾸며 희망의 나라를 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런 이웃들과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의 증언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교회가 되기로 선언합니다.**

1. 이민자보호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 기능을 담당한다.
2. 강도 만난 이웃을 책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교회는 이민자들이 긴급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기능을 담당한다.
3. 세상살이에 힘든 모든 사람들이 홀로 어려움을 당하게 두지 않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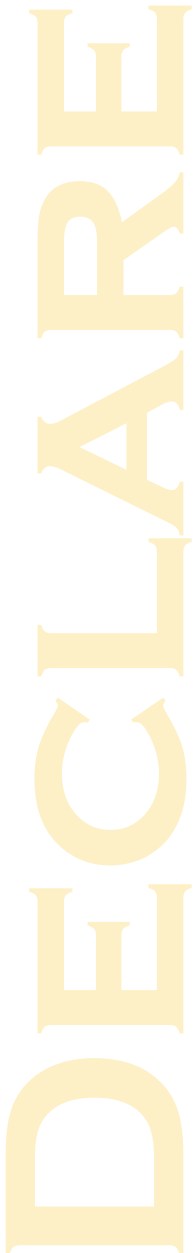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다음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1.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 모든 교회와 커뮤니티에 알리고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가장 가까워서 함께 할 것이다.
2. 교회가 이민자들의 긴급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를 알리는 배너와 포스터를 붙여서 교회가 임시 피난처임을 알린다.
3. 교회가 요청하면 이민관련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법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추방이나 각종 어려움에 처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핫라인 718-450-8603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법률보호 대책위)을 운영한다.
5.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긴급기도회의 날을 지정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명회를 실시하여 더 많은 교회들이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다.

고통받는 이민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실천하는 그 한 길에 있을 것이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려는 우리의 사랑은 서류 미비자들 뿐아니라,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널리 전하려는 바입니다.

2019년 5월 9일 (2017년 4월 7일 제정)

**이민자보호교회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일동**





RON KIM  
Member of Assembly  
District 40, Queens

CHAIR  
Majority House Operations

THE NEW YORK STATE ASSEMBLY

DISTRICT OFFICE:  
136-20 38<sup>th</sup> Avenue, Suite 10A, Flushing, New York 11354  
718-939-0195 • FAX: 718-939-1238

ALBANY OFFICE:  
Room 419, Legislative Office Building, Albany, New York 12248  
518-455-5411 • FAX: 518-455-4995

EMAIL: kimr@nyassembly.gov



COMMITTEES  
Health  
Education  
Housing  
Social Services  
Corporations, Authorities and  
Commissions  
Governmental Operations

MEMBER  
New York State  
Black, Puerto Rican, Hispanic and  
Asian Legislative Caucus

New York State  
Assembly/Senate  
Puerto Rican/Hispanic  
Task Force

May 9, 2019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42-15 166th Street  
Flushing, NY 11358

Dear Friends,

I am pleased to welcome you to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s 3rd annual Symposium. I hope you will join us tonight in celebrating the essential work and positive impact of this pillar of our community.

Since its inception in 2017,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KASCN)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helping the most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Comprised of 13 Center Churches and 107 Support Churches mostly within the Tri-State area, KASCN endeavors on a daily basis to help immigrants and the undocumented who face social and legal challenges, offering crucial services such as legal assistance, mental health services, and shelters. Its work touches countless lives and has become guiding light in our community for those that have nowhere else to turn to.

On behalf of the New York State Assembly, I congratulate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on its tireless dedication and admirable contributions to our community, and offer my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evening and even greater future success.

Sincerely,

Ron Kim  
Member of Assembly  
District 40, Queens

QUEENS OFFICE  
38-50 BELL BLVD.  
BAYSIDE, NY 11361  
PHONE: (718) 765-6675

ALBANY OFFICE  
802 LEGISLATIVE OFFICE BLDG.  
ALBANY, NY 12247  
PHONE: (518) 455-2210  
  
LIU@NYSENATE.GOV

NEW YORK  
STATE  
SENATE



SENATOR JOHN C. LIU  
MAJORITY ASSISTANT WHIP  
11<sup>TH</sup> SENATE DISTRICT

CHAIRPERSON  
NYC EDUCATION COMMITTEE

COMMITTEES  
EDUCATION  
FINANCE  
BUDGET AND REVENUE  
TRANSPORTATION  
RULES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May 9, 2019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53-71 72nd Pl,  
Maspeth, NY 11378



Dear Friends,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extend my warmest greetings and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3rd Symposium of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I applaud your commitment to provide sanctuary to vulnerable immigrants facing social and legal challenges.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was formed in March 2017 and is comprised of 13 Center Churches and 107 Support Churches. They provide shelters for the undocumented, DREAMers, non-immigrant visa holders or permanent residents who face a risk of deportation driven by Administration's unprecedented anti-immigration policies.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also focuses on educating communities on various issues affecting immigrants through seminars and symposiums. This year,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will hold its 3rd Symposium, discussing “Welfare Churches for Immigrants and Public Charge.”

On behalf of the New York State Senate, I commend all the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Your success is largely due to the dedication and participation of your members, leadership and supporters.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in the future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and personal wishes for its continued excellence.

Sincerely,

John C. Liu  
New York State Senator  
11th District, Queens



# 1부 예배

**인도:** 홍인석 목사(뉴저지교협 회장)

**기도:** 정순원 목사(뉴욕교협 회장)

**성경봉독:** 박창완 장로(한울림교회)

(삼하 21:1-2절)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삼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내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특송:** 조이플 합창단

“이 땅에 참 평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설교:** 윤명호 목사(뉴저지 이보교 TF 위원장)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헌금찬양:**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이보교 TF 임원단

“우리 오늘 눈물로”

**헌금기도:** 이용보 목사(뉴욕한인교회)

**축도:** 이정찬 목사(커네티컷교협 회장)

Worship





## 2부 심포지엄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

환영인사 | 조원태 목사

심포지엄 진행 | 김진우 목사

1.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  
- 김원재 목사

2. 복지교회의 사회적 의미  
- 김동찬 대표

3. 복지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 차현화 사회복지사

복지디렉터 임명장 수여

4. 주택관련 퇴거소송 및 관련 법  
- 토마스 리 변호사

5. 정부보조 수혜(Public Charge)가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 조문경 변호사

##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

복지교회는 이민자보호교회가 성숙해가며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공부하며 준비했고, 구체적으로 실증적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민자보호교회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배태하고 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민자의 지위와 처우는 같은 시각에서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목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이미 드러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공동체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없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었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심판의 대상으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지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기보다는 성서에서 오래 전부터 언급한 공동체의 목적과 책임에 관련된 것입니다.

### 1.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는 심판의 대상이다

BC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왕국의 멸망 원인을 위와 같이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교회의 당위성이고, 한 나라의 공동체적 건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 이사야서 10:1-4(새번역)

1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2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3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4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 2. 모든 사람들에게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고, 이것은 종교적 의무이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로 언급된 사람들은 당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회는 배려해야 했고, 공동체는 종교적 행위로서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 1) 신 24:19-21(새번역)

19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20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21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 2) 신명기 26:12(새번역)

12 세 해마다 십일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 3. 신약교회는 태동기부터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신약교회는 이 실천이 곧 교회 존재 목적과도 연결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섬김과 봉사(=디아코니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재화는 축적하고 독점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공동소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며 그것은 축적과 독점으로 이어져 사회적 책임보다는 교회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 1) 사도행전 6:14(새번역) : 디아코니아교회(=복지교회)

1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2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배부르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3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4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 2) 엑클레시아인가 큐리아콘인가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엑클레시아로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새 큐리아콘(Kuriakon)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Church는 큐리아콘(Kuriakon)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교회(엑클레시아)는 사람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건물을 짓고 재산을 쌓으며 그것을 의미하는 큐리아콘(Kuriakon)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큐리아콘의 후예가 아니라 신약성서에 나오는 교회적 본질인 엑클레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엑클레시아)"인 교회가 당연히 취하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한 또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 이민자보호교회 복지교회 (Social Welfare Church)

**김동찬 대표**  
시민참여센터 대표  
이보교 TF 멤버

## 이민자보호교회의 복지교회(Social Welfare Church) 란?

이민사회의 특성상, 언어, 법, 생활방식,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나 합법체류자,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민자보호교회의 멤버들에게 사회보장제도, 주택, 이민법, 자녀들의 학교생활문제, 정신건강 등 이민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민자의 이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확대된 이민자보호교회 운동

## 복지교회의 필요성

정부 및 비영리기관의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한계.

언어문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과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필수

## 복지교회의 비전

교회가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커뮤니티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고, 커뮤니티가 교회를 믿고 신뢰하면서 모두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

## 복지교회의 내용과 역할

정부관련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노인들이 매달 여러 종류의 영문 편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이나 어느 기관을 방문할 때 한 보따리 편지를 들고 가서 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편지 하나 당 10불씩 주고 읽어주는 브로커들을 찾아야 하나, 이 서비스를 각 교회에서 제공.

정부 복지혜택들이 가끔 바뀌는데 이럴 때 보내준 편지에 답을 하거나 소셜 오피스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동행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태프들을 교회에서 도움을 제공.

이민자보호 교회라는 교회 네트워크이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묶어서 사회 복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여 변화하는 내용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민권이 없고 10년 이상 일을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영주권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은 뉴욕시 기준으로 380불 정도와 푸드스탬프가 전부다. 10년 이상 세금을 냈거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800불 정도 받는다. 이런 분들이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균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본인의 재산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는 정말 어려운 생활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사회보장제도 및 혜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회내 복지 책임자의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됨.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교회가 나서서 도와 줄 수 있도록 하여 교회가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이웃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사회 선교를 가능케 함.

### 복지 디렉터의 자격과 업무

복지디렉터는 각 교회에서 사회선교의 부분을 담당하는 사명으로 임명하고, 복지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회를 찾아서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 사회선교의 사명으로 임명받고 복지 교육을 받은 복지 디렉터들은 선교의 영역을 벗어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활동함.

### 사회복지교회의 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SSI, SSA, SNAP(푸드스탬프)  
노인 및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상담과 신청도움,  
각종 영어 편지 읽어주기 및 통역  
사회복지 Help Line 646-389-1239, welfare@kace.org

교회 밖에서 복지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하는 복지 Help Line 은 이민자보호교회 내 복지교회 설립과 교육을 담당해온 시민참여센터가 운영하며, 서비스 요청 전화를 가까운 교회 복지 디렉터들에게 연결하여 준다.

### 이민자보호교회 복지교회 운영 조직

운영주최: 이보교 산하 복지교회 TF  
복지교회 관리 및 운영: 시민참여센터  
복지디렉터( Welfare Director)  
전문 훈련 기관: Hamilton Madison House  
(차현화 사회복지사 (Hyun Hwa Cha, LMSW, MFT) & 한누리 사회복지사 (Nuri Han, LMSW)

**뉴욕 복지교회 참여 교회**

- 친구교회
- 늘기쁜 교회
- 한울림 교회
- 어린양 교회
- 뉴욕우리교회
- 후러싱제일교회
- 메트로폴리탄 한인 연합감리교회

**뉴저지 복지교회 참여 교회**

- 뉴저지 동산교회
- 산돌교회
- 뉴저지 참된교회
- 뉴저지 새방주교회
- 뉴저지 새빛교회

#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 Social Security- SSA, SSI, SSP

### Retirement Benefit (SSA)

\* 자격 : 일을 하여 Social Security tax를 10년간(1 quarter =1 credit. 1year=4 credits. 총 40credit이 필요. 1 credit을 쌓으려면 2018년 기준 1 quarter (3개월)에 \$1,320의 근로소득이 필요.) 내면 은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Disability Benefits (SSD)

충분한 Social Security Credit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중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병에 걸리면 연령에 관계없이 혜택 받을 수 있다.

### Survivor Benefit

사망시 남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살아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보다 은퇴연금 금액이 낮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금액으로 맞춰준다. 또한 사망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에게 \$255을 lump-sum으로 지급된다. 만일 이혼 상태이면, 그 전 배우자도 혜택 받을 자격이 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연방정부인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매월 제공하는 생활 보조금 혜택.

\* 자격 : 65세 이상 또는 시각/신체장애인이며, 소득이 싱글(\$837) 부부(\$1229)이하,  
재산이 싱글(\$2,000) 부부(\$3,000) 미만.

\* 신분상태

A. 미국 시민권자

B. 비시민권자 수혜 대상자

- 1996년 8월 22일 당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시각/신체 장애인이었을 경우

- 1996년 8월 22일 당시 SSI를 받고 있던 경우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고, 40 Social Security Credit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부모 credit도 포함)

- 현역 미국 군인

- 미국인과 아시아인 혼혈 이민자로 인정된 특정 비시민권자

- 난민, 가정폭력 피해자/인신매매 등으로 받은 임시 신분증을 받은 경우는 최대 7년까지 혜택 가능.

\* 재산-지난 36개월 간의 재산 상태 확인

## New York State Supplement Program (SSP)

뉴욕주 정부인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Office에서 매월 제공하는 생활 보조금 혜택.

### Medicare

쇼셜 서큐리티 은퇴 연금 받을 자격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또는 철도청에서 은퇴연금을 받은 사람, 65세 이하의 장애인단을 받은 사람 중에 지난 2년동안 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을 받는 사람들이 메디케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Part A covers (Hospital insurance 종합병원보험)
2. Part B covers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3. Part C (Medicare Advantage Plan, HMO, PPO)
4. Part D (약보험)

### Medicare Savings Program

저소득 노인들에게 Medicare Part B 의료보험 비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 Medicaid

-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를 받았으면, 오직 뉴욕주에서만 사용가능
-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영주권 받자마자 자격이 되면 지원가능, 뉴욕에만 해당)
- Emergency Medicaid : 주로 큰 병원에서 사회복지사와 의사들이 지원해줌
  - "Necessary" treatment: 심각한 신체 손상과 기능저하  
(큰 사고, 암 등 중한 병을 가졌을 경우: EMERGENCY)
  - 시민권자 및 법적인 이민자가 아니지만 모든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 Surplus (Spend-down) income program: payback program
- Pooled income trust program

###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매달 제공되는 식품품 비용 지원 서비스. SNAP(스냅) 혜택을 푸드스탬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자격 요건 (가구 수, 생활비, 수입, 신분에 따라 결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 한달 최대 혜택 금액: 1인-\$192, 2인-\$352

### Housing

#### 1. 퍼블릭 하우스징 (Public Housing)

-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아파트
- 대상: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및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
- 렌트: 수입의 30%

<https://apply.nycha.info/>



## 2. 어포더블 하우스링 (Affordable Housing)

-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아파트
- 공고한 기간에 신청을 하여 추첨형식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 대상: 18세이상 신청 가능함. 가족 구성원 수 대비 수입 조건이 맞아야 함  
노인만 위한 아파트도 있음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및 우편접수

<https://a806-housingconnect.nyc.gov/nyclottery/lottery.html#home>

## 3. 미첼라마 하우스링 (Mitchell-Lama Housing)

- 주택커뮤니티개발국(DHCR) 또는 주택보존개발국(HPD)의 보조금으로 운영
- 주로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본인이 직접 아파트 선정 가능하다
- 렌트 또는 Co-op 두 종류이며 연방 정부의 지원 유무도 다르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https://a806-housingconnect.nyc.gov/nyclottery/lottery.html#ml-home>

## 4. 노인아파트

### 1) 어덜트홈(Adult Homes)

- 개인/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장기거주 방 시설(독방/공동사용)
- 모든 식사, 집안일, 24시간 감독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는 없음)
- 대상: 앉고 서는 것은 가능하나 이동에는 도움이 필요한 성인. 연령제한 없음.
- 비용: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SSI 금액으로 충당

### 2) 언리치하우스링(Enriched Housing)

- 어덜트홈보다 더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한 아파트
- 1-2회 식사, 집안일 및 부분감독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는 없음)
- 대상: 신체허약하나 너싱케어는 필요없는 62세 이상 노인(주로 65세 이상)
- 비용: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SSI 금액으로 충당

### 3) 어시스티드리빙 프로그램(Assisted Living Program)

- 어덜트홈과 언리치하우스링에 있는 프로그램.
- 식사, 집안일, 간병인, 개별 응급상황 대처, 일부 너싱케어, 물리치료, 직업치료, 언어치료, 의료기기, 사회복지서비스, 감독 서비스 가능. 간호사 상주.
- 대상: 너싱홈에 들어갈만하나 의료적으로 양호한 건강 상태
- 비용: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Medicaid와 SSI 금액으로 충당

\* 1,2,3 시설 리스트(뉴욕주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profiles.health.ny.gov/acf>

#### 4) 섹션 202 노인아파트 (Section 202 Senior Apartment)

-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아파트
  - 독립적 생활을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나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함
  - 대상: 62세부터 신청 가능.
  - 렌트: 수입의 30%, 나머지는 연방 정부가 지원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서를 받아서 우편접수
- \* Sec 202노인아파트 리스트

<https://www1.nyc.gov/site/dfta/about/publications.page>

<http://www.nyfsc.org/housing-services/affordable-housing/>

<http://www.hud.gov/apps/section8/index.cfm>

## 논의 사항

- 1) 다른 인종들의 경우 의료보험과 사회복지 정보 및 노인법 및 상속에 관한 법률(Power of Attorney 및 pooled trust 포함)로 은퇴 후 수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성이 용이한 반면, Korean community 경우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극히 미비한 상태.
- 2) 타 커뮤니티의 경우(특히, 중국 및 유대인 경우), 하우스징 및 소셜 베니픽에 대해 로컬 신문 및 메스컴을 각 인종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음. (예를 들면, 한인 신문 및 메스컴의 경우,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에만 국한 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나 복지 정보에 대한 내용이 제한 되어 있음, 중국 신문에는 affordable housing 외에, NORC program, Mitchell - Lama housing, enriched housing and assisted housing 등 다양한 하우스징 정보가 local news paper 에 자주 등장함.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커뮤니티 일반인들도 하우스징에 대한 정보가 많음.)

# 세입자의 권리

**토마스 리 변호사**  
Senior Staff Attorney  
Queens Legal Service

## 퇴거 소송

2

Holdover v. Non-payment

## Holdover / Non-payment

3

- Termination Notice/Rent Demand Notice → 소장 (Petition) → [Non-payment일 경우 변론 (Answer) 제출] → 첫번째 법원출석일 → 변호사가 없다면 한번 연기 가능 (3-5주)
  -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내에 집을 비우지 못 하거나 돈을 못 갚을 경우 Order to Show Cause (OSC)를 제출하여 시간연기 요청 가능
- City Marshal이 이미 퇴거를 진행했어도 OSC를 통해 다시 아파트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파트 수리 문제

4



##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

5

- 집주인에게 알림 (편지 권유)
- 311에 전화
  - 조사관 방문
  - 시정부에서 위반 사실을 기록합니다 ("HPD online" 검색)
- HP (Housing Part) 소송
  - 주택 법원
- 기록 보관
  - 사진, 비디오, 집주인에게 보내는 편지, HPD/DOB 조사관 방문 기록, 수리 비용 영수증, 311 전화 내역, 아파트 내부 온도 기록 (아침, 낮, 밤)

## 룸메이트 법

6

합법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

## 누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나요?

7

- 아파트가 과밀 상태만 (overcrowding) 아니라면 직계가족 거주 가능
- 리스 계약자가 한명일 경우 계약자의 직계가족 + 한 명의 룸메이트 + 룸메이트의 부양자녀 거주 가능

## 집주인의 허락

8

- 필요없습니다
- 렌트 규정(rent-controlled/rent-stabilized)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 리스 계약서 없이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은 언제든지 30일전에 통보 후 퇴거 소송 가능

## 더 알아야 할 것들

9

- 시영아파트(public housing)에 거주하거나 정부 렌트 보조금을 받는다면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이나 룸메이트의 소득 보고 의무
- 만약 렌트 규정(rent-controlled/rent-stabilized)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룸메이트에게 비례금액만 요구 가능

## 불법 퇴거

10

## 불법퇴거란

11

- 퇴거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절차
  - 자물쇠 변경
- 불법퇴거를 당했을 경우:
  - 경찰을 부르거나
  - 주택법원에 가서 OSC 제출

## Queens Legal Services 의 역할

12

## How QLS can help

13

- 소송을 맡아 변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이나 집주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QLS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자격요건

14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 예외:
    - Queens Family Justice Center를 통해 referral을 받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VAWA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거나 시민권자 자녀가 있고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 임신때에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일 경우
    - 망명자일 경우
    - U-visa 소유자일 경우
- 연간 가계 소득이 Federal Poverty Line의 200% 미만
  - 예외: 특별 zip code에 해당될 경우 400%까지 가능\*
- 특별 zip code에 해당될 경우 케이스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별 zip code: 11101, 11354, 11358, 11691, 11692, 11373, 11385, 11433, 11434

## 자격요건 (cont'd)

15

- 주택법원 Room 454에서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의 referral을 받아야 케이스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미 퇴거가 진행되었거나 City Marshal의 eviction notice를 받았을 경우 케이스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택분쟁관련 무료법률서비스

상가(Commercial Property)가 아닌 주택(Residential Property)에서 발생하는

- 1) 주택 퇴거 사건 (EVICTION - Nonpayment & Holdover)
- 2) 주택 주거환경 문제 (아파트 수리문제 & 난방/온수문제)
- 3) 세입자 불법 퇴거 문제(ILLEGAL LOCKOUT)
- 4) 룸메이트 분쟁등으로 소송을 당했거나 건물주를 상대로 소장(PETITION)을 Housing Court 에 접수해야 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Legal Services NYC 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입니다.

### < Legal Services NYC 의 주택 퇴거소송관련 한인 변호사 정보>

문의 Central Hotline: 917-661-4500

#### ■ 퀸즈 주택 담당 한인변호사

**Thomas Lee**

Senior Staff Attorney | Queens Legal Services

89-00 Sutphin Blvd, 5th FL

Jamaica, NY 11435

Tel/Fax: 347-592-2213

Email: tmlee@lsnyc.org

#### ■ 브롱스 주택 담당 한인 변호사

**Heejung Kook, Esq.**

Bronx Legal Services

Deputy Housing Director

349 E 149th Street, 10th Fl.

Bronx, NY 10451

Tel: (347) 592-2451

Email: hkook@lsnyc.org

#### ■ 브루클린 주택 담당 한인 변호사

**Jooyeon Lee, Esq.**

Brooklyn Legal Services

Deputy Housing Director

Tel: (718) 233-6410

Email: jlee@lsnyc.org

#### ■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Only.

단 아래 예외 해당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Queens Family Justice Center를 통해 referral을 받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VAWA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거나 시민권자 자녀가 있고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 인신매매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일 경우
- 망명자일 경우
- U-visa 소유자일 경우
- 연간 가계 소득이 Federal Poverty Line의 200% 미만
- 특별 zip code에 해당될 경우 케이스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플러싱 포함)
- 주택법원 Room 454에서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의 referral을 받아야 케이스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이미 퇴거가 진행되었거나 City Marshal의 eviction notice를 받았을 경우 케이스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조문경 변호사

이민법 전문변호사  
시민참여센터 법률위원

# 정부보조수혜 (Public Charge)가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 1. 정부보조 수혜에 관한 법규

- 1) 이민국적법 INA §212(a)(4): 정부보조 수혜자이거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를 기각할 수 있다.
- 2) 국토안보부는 정부보조 수혜(공공복지혜택)에 관한 개정안을 2018년 10월 10일 부터 60일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검토중이며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어 시행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 2. 정부보조 수혜(공공복지혜택) 적용 대상자

- 1)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
- 2) 개정안에는 신분변경 및 연장 신청자도 포함
- 3) DACA, VAWA, 망명, 난민, T, U 비자 신청자 등은 제외
- 4)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 안됨

## 3. 현행규정: 1999 INS Interim Field Guidance에 의거 다음 3가지 정부보조 수혜를 받은 경우만 영주권/비자 거절사유가 되어 왔다.

- 1)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빈곤가족 현금지원
- 2)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 생계보조금
- 3) Institutionalization for long term care at government expense 정부보조 장기요양

## 4.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보조 수혜 프로그램은 위 3가지 외 다음이 추가되었다.

- Medicaid 메디케이드 (응급환자, 장애인교육서비스 제외)
- Medicare Part D Low Income Subsidy 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층 지원금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푸드스탬프
-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섹션 8 주택바우처지원
-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섹션 8 렌트보조금
- Public Housing 공공주택



## 5.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보조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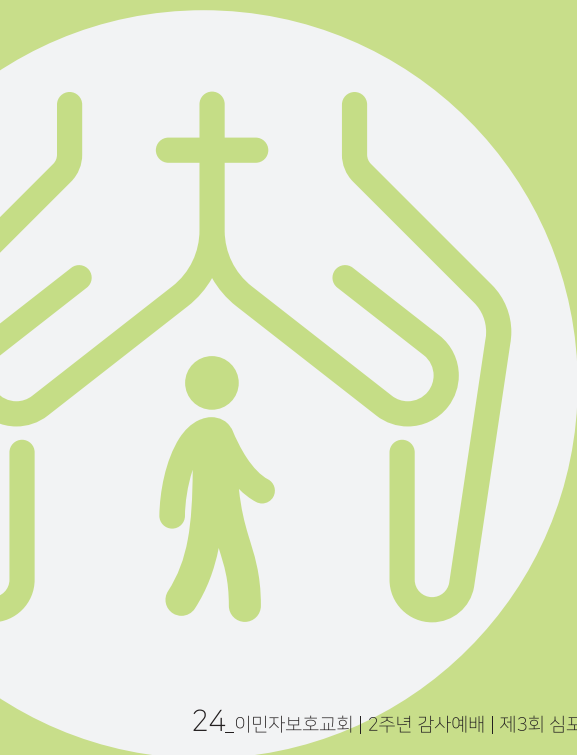
-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응급의료서비스
- National school lunch/breakfast program 학교급식
- Foster care and adoption 아동입양양육
- Head Start 무료유아교육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산모 유아 영양보조 프로그램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 Subsidized health insurance 저소득층 건강보험지원
-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자 세액공제
- 그외 Disaster relief 재난구호금, Energy benefits, housing assistance 등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지혜택
- 시민권자 자녀 등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가족구성원이 받는 복지혜택

## 6. 정부보조 수혜 대상자 계산 방법

- 1) 12 month rule: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전 연속적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현금, 푸드스탬프, 주택/렌트비 지원금과 같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복지혜택 총액이 연방에서 정한 빈곤가족 소득(Poverty Guidelines)의 15% 이상일 경우 (1인 가족은 2019년 빈곤소득 \$12,490 x 15% = \$1,873.50, 4인 가족 \$25,750 x 15% = \$3,862.50)
- 2) 36 month rule: 금액으로 환산이 힘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파트 D, 공공주택 혜택을 최근 36개월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받은 경우
- 3) 9 month rule: 복지혜택 금액이 빈곤가족소득의 15% 미만이지만 이에 더하여 비현금 복지혜택을 9개월 이상 받은 경우
- 4)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 나이, 건강상태, 가족, 자산, 재산상태, 학력, 기술, 취업기록 및 가능성 등 신청자 개인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신청시점 현재와 이전 36개월 동안 받은 복지혜택에 큰 비중을 두고 앞으로 정부보조 수혜자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7. 정부보조 수혜가 추방사유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_시 46:1  
God is our refuge\_Psalms46:1  
神是我们的避难所\_詩篇6:1  
DIOS es nuestro amparo\_Salmos 46:1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A Church Is A Sanctuary  
让教会成为您的避难所  
La Iglesia Ser?Su Amparo



# 이민자보호교회 조직

## 이민자보호교회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 : 김원재 목사  
동남부 네트워크 : 이상현 목사  
중남부 네트워크 : 강주한 목사  
중북부 네트워크 : 손태환 목사, 송진우 목사

## New York Task Force

고문 : 김정호 목사  
위원장 : 조원태 목사  
Secretary : 강창훈 목사  
Treasurer : 빈상석 목사  
Legal TF : 박동규 변호사  
Dreamer TF : 김진우 목사  
Social Welfare Church TF : 김동찬 대표

## New Jersey Task Force

위원장 : 윤명호 목사  
Secretary : 박순진 목사  
Treasurer : 김대호 목사  
Legal TF : 주디장 변호사  
Social Welfare Church TF : 김동찬 대표

## Connecticut Task Force

위원장 : 조건삼 목사



## 센터교회 (13개)

뉴욕늘기쁜교회 (김홍석 목사)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뉴욕초대교회 (김승희 목사)  
 뉴욕한인교회 (이용보 목사)  
 친구교회 (반상석 목사)

하은교회 (고훈 목사)  
 한울림교회 (김원재 목사)  
 호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 목사)  
 뉴저지동산교회 (윤명호 목사)

뉴저지침된교회 (박순진 목사)  
 애틀란타중앙장로교회 (한병철 목사)  
 커네티컷 전도치유교회 (조상숙 목사)

## 후원교회 (94개)

All Saint Episcopal Church  
 Korean Ministry (배요셉 신부)  
 갈보리순복음교회 (백형두 목사)  
 기쁨과 영광교회 (권캐더린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 (이지용 목사)  
 뉴욕그레이트백교회 (양민석 목사)  
 뉴욕만나교회 (정관호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최현준 목사)  
 뉴욕새생명장로교회 (허윤준 목사)  
 뉴욕살롬교회 (석필환 목사)  
 뉴욕선민교회 (함성은 목사)  
 뉴욕성서교회 (김종일 목사)  
 뉴욕성원장로교회 (한준희 목사)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  
 뉴욕소금교회 (한중은 목사)  
 뉴욕수정성결교회 (황영송 목사)  
 뉴욕신광교회 (강주호 목사)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만호 목사)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양승호 목사)  
 뉴욕승리교회 (박이스라엘 목사)  
 뉴욕 아름다운 교회  
 뉴욕양무리장로교회 (이준성 목사)  
 뉴욕어린이양교회 (박윤선 목사)  
 뉴욕어린이양개혁교회  
 (류승례, 임지윤 목사)  
 뉴욕연합장로교회 (최지호 목사)  
 뉴욕열린교회 (장현숙 목사)  
 뉴욕영안교회(김경열 목사)  
 뉴욕예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뉴욕주심교회 (이지훈 목사)  
 뉴욕주찬양교회(김희복 목사)  
 뉴욕참사랑교회 (최요셉 목사)  
 뉴욕큰샘교회 (이은수 목사)  
 뉴욕플러스교회 (김준근 목사)  
 뉴욕평안교회 (조재형 목사)  
 뉴욕평화교회 (임병남 목사)  
 뉴욕한민교회 (주영광 목사)

뉴욕효성교회 (김영환 목사)  
 뉴저지 산돌교회 (김대호 목사)  
 뉴저지 새언약교회 (김종국 목사)  
 뉴저지 새방주교회 (박인갑 목사)  
 뉴저지 열방교회 (전우철 목사)  
 뉴저지 오늘의목양교회 (장동신 목사)  
 뉴저지 예손교회 (김삼웅 목사)  
 뉴저지 하늘뜻교회 (한재경 목사)  
 뉴저지 수정교회 (이준규 목사)  
 랄리한인장로교회 (이상현 목사)  
 리빙스톤교회 (유상열 목사)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용연 목사)  
 미시간 세기너 장로교회 (박시문 목사)  
 미주사랑의교회 (백문현 목사)  
 미주서부장로교회 (김선의 목사)  
 베델연합감리교회 (김영식 목사)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이종식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 (류재덕 목사)  
 보스톤비전감리교회 (홍종욱 목사)  
 보스톤한인교회 (이영길 목사)  
 빛과소금교회 (정순원 목사)  
 새가나안교회 (최요셉 목사)  
 새시대교회 (노기송 목사)  
 선한목자교회 (박준열 목사)  
 세계체육인선교회 (김재룡 목사)  
 세인트폴 연합감리교회 (류영철 목사)  
 스탬포드 연합감리교회 (김광일 목사)  
 시카고 삼보그한인교회 (서평원 목사)  
 시카고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목사)  
 시카고 기쁨의 교회 (손태환 목사)  
 애틀란타한인교회 (김세환 목사)  
 애틀란타 임마누엘 교회 (신용철 목사)  
 에벤에셀선교회 (최창섭 목사)  
 연합감리교 뉴욕연회소속목사  
 (Paul Fleck 목사)  
 예수생명교회 (김요셉 목사)  
 와싱턴 제일감리교회 (정성호 목사)

워싱턴 DC2DC교회 (홍주형 목사)  
 웨체스터장로교회(노성보 목사)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용철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우종현 목사)  
 은혜와 사랑교회 (안경순 목사)  
 조지아 뉴난살롬감리교회 (김학수 목사)  
 좋은씨앗교회 (임용수 목사)  
 참사랑교회 (은희곤 목사)  
 체리힐연합감리교회 (김일영 목사)  
 퀸즈동부교회 (정대영 목사)  
 퀸즈성결교회 (조승수 목사)  
 퀸즈성령강림교회 (마바울 목사)  
 큐가든성신교회 (이재봉 목사)  
 큰은혜교회 (송일권 목사)  
 캔사스한인연합교회 (김준형 목사)  
 펄그림선교회 (양춘길 목사)  
 한길선교회 (한석진 목사)  
 확산교회 (황태연 목사)  
 웨어필드그레이스한인교회 (조건삼 목사)  
 휴스턴비전교회 (강주한 목사)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조은성 목사)

## 협력 기관

뉴욕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커네티컷한인교회협의회  
 커네티컷 한인목사회  
 뉴욕교협청소년센터  
 시민참여센터  
 소셜워커 협회  
 (NY/NJ Social Workers' Association)  
 Hamilton Madison House

## 가입단체

New Sanctuary Coalition

# 늘 '작은자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이민자 보호교회의 제3회 심포지엄을 축하 드립니다!



Law office of Andrew D. Park, PC 16 W 32 St. Suite #1101, NY, 10001  
박동규 변호사 212-279-3883

80% Voter Registration, 80% Voter Turn Out  
Striving To Become A More Responsibl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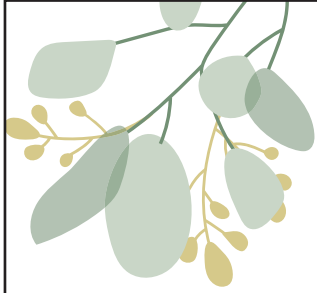
KACE.ORG

선거문의 핫라인 | Voter Hotline 347.766.5233  
이민자 법률지원 핫라인 | Hotline for Immigrants 646.450.8603

# JUDYchang

## Immigration Lawyers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yers  
[www.judychanglaw.com](http://www.judychanglaw.com)  
NY, NJ, CA



이민자보호교회  
2주년 감사예배와  
제3회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 뉴욕늘기쁜교회 (김홍석 목사)
- 뉴욕수정교회 (황영송 목사)
- 뉴욕어린양교회 (박윤선 목사)
-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 뉴욕한인교회 (이용보 목사)
- 산돌교회 (뉴저지, 김대호 목사)
- 참된교회 (뉴저지, 박순진 목사)





**HEALTH & YOUTH**  
**H&Y**  
MARKETPLACE

*Since 1986... 33년전통의 건강마트, 한양마트*

동포 여러분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지는  
한양마트가 되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다양한 구색 및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보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 & Y** 한양마트  
MARKETPLACE HANYANG MART



**한양마트 리지필드지점** Ridgefield, NJ  
Tel. (201) 943-7400  
1 Remsen Pl. Ridgefield, NJ 07857



**한양마트 히क्स빌지점** Hicksville, NY  
Tel. (516) 935-4041  
487 Plainview Rd. Hicksville, NY 11801



**한양마트 플러싱지점** Flushing, NY  
Tel. (718) 461-1911  
150-5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한양마트 온라인 쇼핑물**

다들 물어보는 선물, 가족사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격려의, 비싼 선물을 위한  
안락한 결제가 이제 이민자에서 한양마트 쇼핑물 통해 가능한 그로써(카드/체크/카드)  
구매 및 각종 선물세트, 간편오(서프) 등 다양한 상품들 만나세요!

**WWW.HANYANGMART.COM**  
(온라인 쇼핑물 관련 문의전화: 718-461-1911)



**한양고국통신판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선물은 33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고조 선물물,  
한양고국통신판매와 함께하세요! 분의 및 주장은 한양마트 온라인 쇼핑물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뉴멕시코주에 배송 가능합니다!

**T. 718-461-1911**  
(TOLL FREE: 877-496-7337) (인라인주문: www.hanyangmart.com)





**morning glory** T. 718.961.1400 F. 718.476.0942  
136-77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한양마트(주) 행복을 전하는 정직한 이름, 대한민국 대표 한국 브랜드-모닝글로리

# 이민자보호교회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

**Hotline**

646.450.8603

사회복지 서비스

**Helpcall**

646.389.1239

뉴욕주정부

无证客被逮捕时紧急热线

NYS Hotline: 888.769.7243

Linea caliente en caso del arresto indocumentado

NYS Hotline: 888.769.7243

✉ [sanctuarychurchny@gmail.com](mailto:sanctuarychurchny@gmail.com)

Facebook.com/SanctuaryChurchNetwork